

『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(2004.3.5개정, 2004.9.6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,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,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의 구성,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집 및 의결 기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,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고,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의무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지원 요구사항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